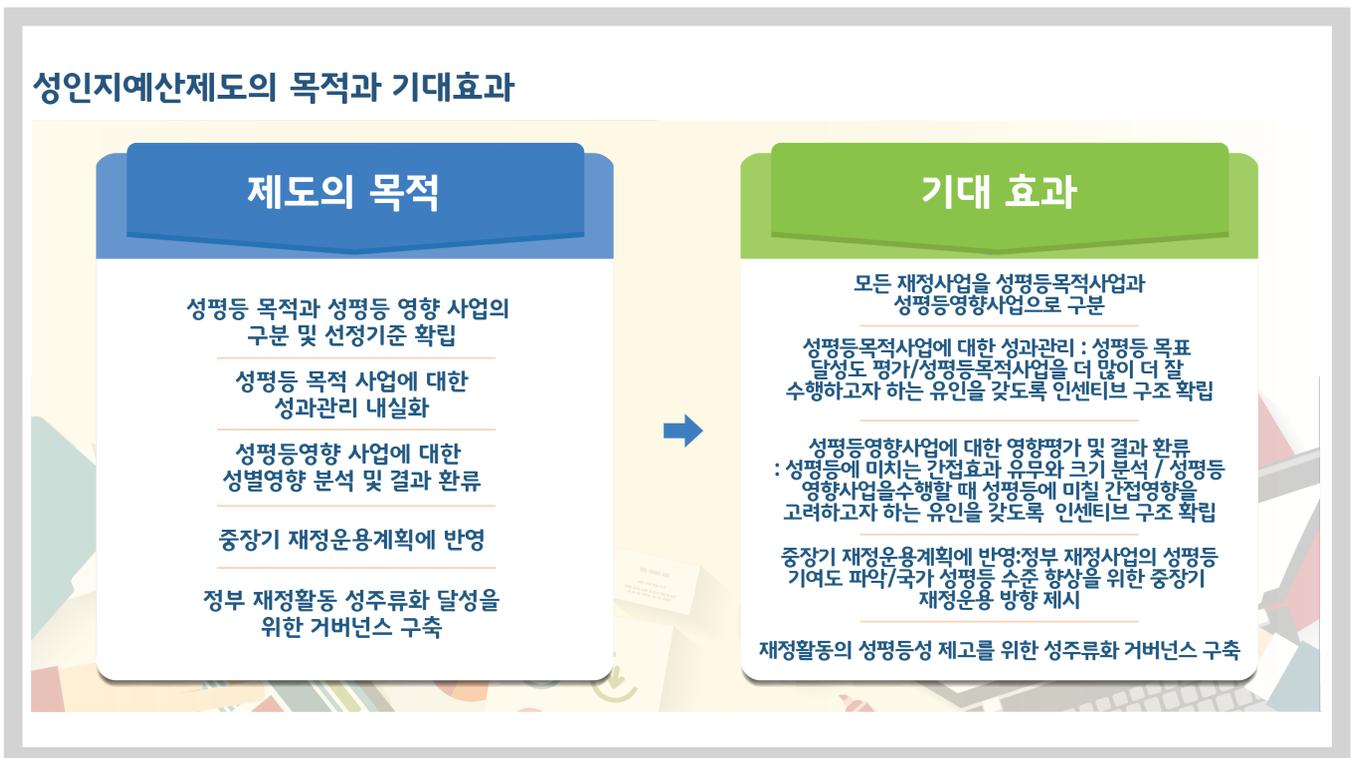


KWDI 이슈페이퍼

수행과제명 국가 성인지에·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VI) 과제책임자 이택면 선임연구위원 (Tel:02-3156-7167 / e-mail:ontbike@kwidmail.re.kr)

국가 성인지에·결산제도의 중장기적 제도 개선방향*

“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그동안의 제도운영 성과를 계승하고 단점을 보완하여
향후 제도 개선을 제안할 시점이 도래함.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속에서
국가성인지예산제도가 현재 운영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적시하며,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함. ”



- 본 연구는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확립하고 적용하여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과관리가 필요한 사업과 그렇지 않은 사업을 구분하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의 성과평가 및 관리를 통해 해당 사업이 의도한 양성평등 기여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데 기여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현재 선정기준으로는 성평등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망라적으로 식별할 수 없으며 성평등목적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파악되었음.
- 또한 성별영향분석 결과가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참조되는 방식이 매우 기계적이며 성평등영향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와 결과 환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예결산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일반 재정사업의 의도되지 않은 성평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정도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판단이 내리는 것이 어려움.
- 본 연구는 이러한 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앞서 제시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고유 목적이 달성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일부 특정 부처를 선정하여 부처 성평등 목표 설정, 그에 따른 대상 사업 선정, 사업별 성평등 목표 및 성과목표 설정,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추진, 성과목표 달성여부 점검 및 그에 따른 성평등 기여도 평가, 성인지결산서 작성 등 제도 운영의 전 과정을 리뷰하였음.
- 마지막으로 모범적인 제도운영 방안을 단기적 방안으로써 상향식 관점의 모범 운영방안과 장기적 방안으로서의 하향식 관점의 모범 운영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1. 배경 및 문제점

본 연구는 성인지예결산제도가 현재 운영 단계에서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중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현재 성인지예·결산
과정에서 가장 해결이
시급한 현안은
다음과 같음**

- ① **현재 선정기준으로는 성평등목적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망라적으로 식별할 수 없음.**
 - ▶ 성평등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고유한 목적(성평등 증진)이 달성되었는가를 체크하고, 성평등영향사업에 대해서는 성별 수혜분석 등을 통해 의도되지 않은 성별 수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분석해야 하나, 현재 선정기준은 두 개의 다른 유형의 사업을 동일한 잣대로 일괄 평가하고 있음.
- ② **둘째, 성평등목적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부실함.**
 - ▶ 성인지예결산서에 수록된 성과정보가 제한적이며, 성과지표 선정의 대표성과 타당성이 의문시되는 경우가 많음.
 - ▶ 성과지표 달성에 따른 보상이나 제재가 없어 성과관리 유인이 약함.
- ③ **셋째, 성평등영향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와 결과 환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부처의 사업 담당자가 체크리스트 작성 수준의 자체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해 전문가가 검토의견을 제시하는 형식임.
 - ▶ 이러한 방식으로는 부지불식 중에 나타날 간접적 효과를 심도 있게 드러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성별 수혜를 격차 비교 만으로는 숨겨진 성평등 간접 효과를 드러내기에 제약이 있음.
 - ▶ 성별영향분석 결과가 성인지예결산서에서 참조되는 방식이 매우 기계적이며 피상적임.

④ 넷째,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성인지예결산 결과가 반영되지 않음.

- ▶ 현행 성인지예결산서에 적시되는 성과정보만으로는 정부가 성평등 개선을 직접 목적으로하는 활동에 할애한 재정규모의 총량적 변화 추이나, 일반 재정사업의 의도되지 않은 성평등 효과를 고려하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 정도에 대한 정량적·정성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움.
- ▶ 따라서 현 성인지예산제도 하에서는 정부의 성평등 관련 자원배분 분야를 적시하여 중장기적 재정운용계획의 일부로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음.

⑤ 다섯째, 정부 재정활동의 성주류화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원함.

- ▶ 현재 상설협의체가 유일한 거버넌스 기구로 운용되고 있으나, 이를 정부의 재정활동을 통한 성평등 제고를 목표로 하는 성주류화 거버넌스가 구축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2. 정책제언

대상사업 선정기준 문제 개선 - 성인지예산 세부지침 개편(안)

⑥ 기본적으로 기관 인건비, 기본경비, 기타 기본경비성비용 등에 해당되는 성과관리 비대상 사업 및 성별분리통계 작성이 어려운 사업을 제외한 모든 재정사업은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음을 명시함.

- ▶ ‘세부지침’ 부분에 이러한 내용의 ‘기본지침’을 추가함으로써 대상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제외기준을 제시해주고, ‘적용대상’에는 사업의 유형을 반영하여 크게 성평등목적사업과 성평등 영향사업으로 구분.
- ▶ 성평등 목적사업은 현재의 선정기준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 외에 여성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하는 사업들, 성폭행, 가정폭행 피해자 지원사업과 같이 취약집단의 절대 다수가 여성 혹은 남성인 사업들로 구성.
- ▶ 반면, 성평등영향사업은 성평등목적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재정사업이 모두 후보가 됨.

원안	개정안
<p>1.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p>○국정과제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 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등 <p>○'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p>	<p>1. 적용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추진사업 ■ '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사업 ■ 기타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p>○국정과제 등 해당기관의 주요 정책 및 사업 중 성별 수혜 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여지가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가족을 대상으로 하거나, 성격차를 개선할 수 있는 사업, 성별영향분석이 가능한 사업 등 <p>○'16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 중 예산사업은 반드시 포함</p> <p>○성인지 예·결산 상설협의체 검토 결과,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가 기 통보 후 작성</p>
<p>2. 세부지침 ~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항 <p>○사업담당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작성방법 숙지 후 성인지예산서 작성</p>	<p>2. 세부지침 ~ (생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사항 <p>○사업담당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교육에 참여하여 작성방법 숙지 후 성인지예산서 작성</p> <p>○외부기관의 지적사항(대상사업 부적절)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와 별도 협의·조정 가능</p>

**체크리스트 개편안과
성인지예결산서
작성양식 개편안**

📍 **체크리스트 개편안**

- ▶ 예산지침 변경이 개편되면 그에 따라 대상사업 선정 체크리스트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양식 또한 변경되어야 함.
- ▶ 세부사업 기준으로 각 단계의 기준을 적용하되, 세부사업내 하위 내역사업이나 내역사업의 수준에서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도 해당 세부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선정함.

1단계 : 양성평등기본계획상 7대과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가?

- ① 예 → 성평등목적사업 ② 아니오 → 2단계

2단계 :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하는 사업인가?

- ① 예 → 성평등목적사업 ② 아니오 → 3단계

3단계 : 취약집단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해당 취약집단의 다수가 여성 혹은 남성인가?

- ① 예 → 성평등목적사업 ② 아니오 → 4단계

4단계 : 개인이나 가구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

- ① 예 → 7단계 ② 아니오 → 5단계

5단계 : 1인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가?

- ① 예 → 7단계 ② 아니오 → 6단계

6단계 : 관리과제 성과지표 중에 자연인에 대한 수혜율, 만족도, 등이 포함돼 있는가?

- ① 예 → 7단계 ② 아니오 → 비대상

7단계 : 수혜자에 대한 성별 집계 가능한가?

- ① 예 → 성평등영향사업 ② 아니오 → 비대상
③ 모름 → 컨설팅 후 결정

📍 **성인지예산서(위)와 성인지결산서(아래) 작성양식 개편안**

- ▶ 앞서 제시한 두 사업유형별로 구별되는 작성 양식을 반영한 개편안은 아래와 같음.
- ▶ 개편안의 요지는 성평등목적사업과 성평등영향사업의 작성 항목을 달리한 것임.
- ▶ 전자의 경우에는 성별 수혜분석 및 전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관련 작성항목을 작성하지 않게 하고, 후자의 경우에는 성평등 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지표 항목을 작성하지 않게 하는 대신 전년도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대해 몇가지 작성항목을 추가함.

원안		개정안	
회 계	세부사업명	회 계	세부사업명
일반회계	① ○○○ ('16년도 사업명)* - ●●● (내역사업명) ② ○○○ ¹⁾ ③ ○○○***	일반회계	① ○○○ ('16년도 사업명)* - ●●● (내역사업명) ② ○○○ ¹⁾ ③ ○○○***
1) 1차년도 양성평등계획 추진사업 2)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추진사업		1) 성평등목적사업 2) 성평등영향사업	
1. 사업별 설명자료		3. 사업별 설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목표 ■ 성평등 기대효과 ■ 성과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유형 성평등목적사업인지 성평등영향사업인지 명기 ■ 성평등 목표(성평등목적사업만 기재) ■ 성평등 기대효과(성평등목적사업만 기재) ■ 성과지표(성평등목적사업만 기재) 	
(성별수혜분석 혹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모든사업 작성		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수혜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수혜분석(해당사업만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성평등영향사업만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수혜격차 유무 · 성평등조치사항 수용 여부 · 적극적조치 포함 예정 여부 · 성평등조치사항 수용시 예산반영 필요성 유무 	

현재양식		개편안	
회 계	세부사업명	회 계	세부사업명
일반회계	① ○○○ ('16년도 사업명)* - ●●● (내역사업명) ② ○○○ ¹⁾ ③ ○○○***	일반회계	① ○○○ ('16년도 사업명)* - ●●● (내역사업명) ② ○○○ ¹⁾ ③ ○○○***
1) 1차년도 양성평등계획 추진사업 2) 전년도 성별영향평가 추진사업		1) 성평등목적사업 2) 성평등영향사업	
총괄부분		총괄부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달성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달성현황 (성평등목적사업에 대해서만 집계) 	
1. 사업별 설명자료		4. 사업별 설명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목표 ■ 성과목표 달성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유형 (추가) 성평등목적사업인지 성평등영향사업인지 명기 ■ 성평등 목표(성평등목적사업만 기재) ■ 성과지표 달성현황(성평등목적사업만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 결과에 대한 원인 · 향후 개선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체평가(성평등목적사업만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지표 미달 원인 분석 · 향후 개선 방안 	

〈표 1〉 성인지예산제도 목적별, 관점별 모범운영방안

성인지예산제도의 목적	상향식 관점의 모범운영 방안	하향식 관점의 모범운영방안
<p>성평등목적과 성평등영향 사업의 구분 및 성전기준 확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세부사업 수준에서 성평등목적사업과 성평등영향사업을 구분·선정하기 위한 객관적 기준 개발 • 성평등목적 사업 선정을 위해 성평등목적에 해당하는 전체 사업 리스트 작성 및 부처 배포 • 성평등영향사업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참조 절차 확립.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항목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적격 여부" 를 추가, 적격 판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기준 마련 • 적격판단 사업에 한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성과계획 작성시 프로그램 수준에서 성평등 목표 설정 • 해당 성평등목표와 연계되는 신규 관리과제 발굴 및 기존 관리과제 재배치 • 나머지 프로그램에 속하는 모든 관리과제들은 모두 성평등영향로 분류되며, 그 중 평가실익이 없는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이 성별영향분석 평가 대상사업이 됨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사업에 한해 별도 양식의 성인지예산결산서 작성
<p>성평등목적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내실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목적, 성평등영향사업 별로 성인지예산 결산서 작성지침 세분화 • 성평등목적사업에 대해 성평등 성과지표 설정 및 부처 성평등목표와 성과지표간 연계성, 성과 지표의 대표성, 타당성 등에 대한 컨설팅 강화 • 성과관리 모범 사업 미흡 사업 선정, 발표 및 모범사업에 대한 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목적 사업은 재정사업성과관리 절차에 완전히 연동돼 성과평가 및 피드백 •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가 성인지예산결산서를 대체 • 타 재정사업과 동일하게 자율평가, 심층평가, 환류과정 거침 • 자율평가, 심층평가시 성평등 관점에서 메타평가나 심층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가부의 지원 및 개입 절차 확립
<p>성평등영향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 분석 및 결과 환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영향 사업에 특화된 별도 작성양식에 따라 성인지예산결산서 작성 • 성인지결산서 작성시 과년도 성별영향분석 결과와 비교, 개선사항 반영 정도 분석. 성평등 저해적 간접효과를 갖는 사업에 대해 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토록 하고 차년도 분석에서 개선방안의 효과를 점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리스트에 의한 부처 사업 담당자의 자체 평가 이외에 외부 전문가에 의한 특정 평가, 여가부에 의한 상위평가 수행을 위한 기준과 절차 마련. • 특정평가, 상위평가 결과의 환류 방안과 절차 마련. • 타 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벤치마킹과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 제고 • 확립된 방법론으로 평가실익이 없거나 명백히 평가가 불가능한 사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형의 사업에 성별영향평가 적용
<p>중장기 재정운용 계획에 반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세부사업 수준에서 성평등목적 사업 수 및 예산규모의 비중 추이 집계 • 성평등목적 세부사업 수준에서 성과지표 달성여부 달성률 집계, 전체 관리과제의 성과 지표 달성비율과 비교 • 각각의 추이 분석을 통해 어떤 분야 성평등 사업의 비중이 높고 성과달성률이 증가하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 성평등영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성평등에 의도치 않게 미친 영향의 유무와 성평등 저해 효과 유무를 적시하고, 전체 성평등 영향 사업 중에서 성평등 저해적 간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 사업의 비중을 집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야별 부문별 국가성평등 지수 확립 • 각 사업유형별로 부처별로 취합된 성과정보와 예산배분 추이를 종합 분석하여 성평등 개선을 위한 재원배분 우선순위 결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및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반영
<p>정부 재정활동 성 주류화 달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이해관계자(여가부, 기재부, 국회, 시민단체, 연구기관)별로 혹은 공동으로 공청회 포럼 등의 행사개최, 의제발굴 및 공론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설 기구 설립, 정부조직 개편, 부처 조직개편 등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3. 기대효과

☑ 성주류화의 주요 도구 중 하나로서 성인지예산제도는 정부 재정활동의 전 과정에 대해 성평등의 관점에서 그것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떻게 다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미래 재정운영에 환류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범운영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성인지예산제도의 고유 기능들이 잘 수행되도록 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최선의 운영 방안을 제시함.

☑ 이상의 정책제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모든 재정사업을 성평등목적사업과 성평등영향사업으로 구분

● 성평등목적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성평등목표 달성도 평가 / 성평등목적사업을 더 많이 더 잘 수행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도록 인센티브 구조 확립

● 성평등영향사업에 대한 영향평가 및 결과환류: 성평등에 미치는 간접효과 유무와 크기 분석 / 성평등영향사업을 수행할 때 성평등에 미칠 간접영향을 고려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도록 인센티브 구조 확립

● 중장기 재정운영계획에 반영: 정부 재정사업의 성평등 기여도 파악 / 국가 성평등 수준 향상을 위한 중장기 재정운영 방향 제시

● 재정활동의 성평등성 제고를 위한 성주류화 거버넌스 구축

☑ 성인지예산제도는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 성평등목적사업인지 성평등영향사업인지를 구분하고 성평등목적사업이 해당 목적을 잘 달성했는지 평가할 수 있게 됨.

☑ 부처가 성평등목적사업을 더 많이 더 잘 추진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도록 적절한 인센티브 구조를 확립하고, 성평등영향사업에 대해서는 그 간접적 영향의 유무와 크기를 분석할 수 있음.

☑ 두 유형의 사업에 대한 평가 및 분석 결과를 축적하여 정부의 재정활동이 국가 성평등 수준의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영계획 및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성평등 달성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어떤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

참고자료

(1) 국내문헌

고용노동부 (2015a), 2015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고용노동부 (2015b), 2016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관계부처합동(2015), 2016 통합재정사업 평가지침('13~'15)회계연도 평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2015), 2016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실시 계획(안)
 국회예산정책처(2009),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0),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1), 2012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3), 2014년도 성인지 예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국회예산정책처(2015a),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분석.
 국회예산정책처(2015b), 「2014회계연도 재정사업성과평가(요약)」 대한민국 국회.
 기획재정부(2009), 2010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2016), 201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획재정부 외(2010), 2011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 외(2011), 2012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 외(2012), 2013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 외(2013), 2014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 외(2014),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 외(2015),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기획재정부 외(2016), 201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
 김영옥 외(2009), 성인지 예산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여성부 연구보고서.
 김진(2008), "성과주의 예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재정포럼 현안분석, 한국
 조세연구원
 나태준 외(2014), 고용영향평가의 제도적 문제점과 대안: 평가환경과 평가자원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24권 pp.127~150
 대한민국정부(2014a), 2015년도 성과계획서(고용노동부)
 대한민국정부(2014b), 2015년도 성과계획서(보건복지부)
 대한민국정부(2014c), 2015년도 성과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정부(2014d), 2015년도 성인지예산서.
 대한민국정부(2014e), 2015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대한민국정부(2015a), 2016년도 성과계획서(고용노동부).
 대한민국정부(2015b), 2016년도 성과계획서(보건복지부)
 대한민국정부(2015c), 2016년도 성과계획서(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정부(2015d), 2016년도 성인지예산서.
 대한민국정부(2015e), 2016년도 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대한민국정부(2016a), 2015회계연도 성과보고서(고용노동부)
 대한민국정부(2016b), 2015회계연도 성과보고서(보건복지부)
 대한민국정부(2016c), 2015회계연도 성과보고서(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정부(2016d), 2015회계연도 성인지결산서
 마경희 외(2009),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모니터링: 공무원 의견조사를 중시
 으로.
 미래창조과학부(2014),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 성과지표(4차)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
 박노옥(2007), "우리나라 재정 성과관리제도의 현황 및 평가", 재정포럼 현안분석,
 한국조세연구원
 박노옥(2008),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조세연구원
 박노옥 외(2008), 성인지 예산의 성과지표 개발 지침, 한국여성연구원 연구보고서.
 박노옥 외(2012), 「국가 성인지예산사업의 사업별 성평등지표 개선 연구」,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송수중·홍준현(2012), 고용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모형의 설계 및 적용, 정
 책분석평가학회
 오영민·박노옥(2014), 재정사업성과평가제도 10년의 운영 현황, 성과 그리고 발전
 방향, 한국정책학회 학술대회, 2014(1), pp.581
 오영민 외(2014), 신공공관리의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윤기웅, 공동성(2012), "성과와 예산간 연계성 분석", 한국행정연구, 21(2), 165-
 197
 임동완(2011), 정부의 발생주의 회계 정착과 발생주의 예산도입에 관한 연구, 국제
 회계연구
 임주영 외(2012), 「성인지예산제도의 평가모형 구축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조선일(2016), 재정성과관리 관리체계의 효율화, 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pp.183
 조선주 외(2011),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 국가 성인
 지예·결산서 분석·평가 및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방안」,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2012a), 성인지 예·결산서 대상사업 선정 및 합리적인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2012b),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I): 국가 성인지 예산제
 도 운영의 효과 점검과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한국여
 성정책연구원
 (2013),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II): 행정부, 국회의 성인
 지예산제도 시행과정 평가와 지방자치단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개선방안」, 한국여
 성정책연구원
 (2014), 「국가 및 지방재정의 성인지예산 분석·평가사업(IV)」,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5), 「국가 성인지예·결산제도 분석평가 연구(I): 성인지 예산제도를 통한 재
 정사업의 효율제고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주무현(2012), "고용영향평가 방법과 제도 개선방안 모색", 고용영향평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학술대회 자료

최순영(2013), 「프로그램예산제도의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최유진 외(201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 제도에 대한 체감도 제고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하연섭(2011), 정부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 국외문헌

Baumgartner & Jones(1993), The destruction of issue monopolies in congress,
 Political Science Review, 87.

Bradley & Roberts(2004), Self-Employment and Job Satisfaction: Investigating
 the Role of Self-Efficacy, Depression, and Seniority,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2: 37-58.

Decuyper, G. (2011), "Manual for the Application of Gender Budgeting within
 the Belgian Federal Administration," Institute for the Equality of Women and Men,
 Belgium. <http://igvm-iefh.belgium.be/sites/default/files/downloads/Manual%20gender%20budgeting.pdf> (2016.7.28.일 인출)

European Parliament(2014), A New Strategy for Gender Equality: Post 2015.

Ravesloot, S. C. I.(2014),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in Belgium,"
 Comments Paper, Exchange of Good Practices of Gender Equality, European
 Commission.

Schatzenstaller, M. (2014), "Gender Impact Assessment in Austria," Discussion
 Paper, Exchange of Good Practices of Gender Equality, European Commission.

Sharp, R.(2003), Budgeting for Equity: Gender Budget Initiatives within a
 Framework of Performance-Oriented Budgeting, New York: UNIFEM

Sharp, R., and R. Broomhill (2013), A Case Study of Gender Responsive
 Budgeting In Australia, the Commonwealth Secretariate.

UN (1997), Report of 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 for 1997, the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DESA).

<http://www.un.org/documents/ga/docs/52/plenary/a52-3.htm> (2016.8.20.검
 색)

United States, Commission on Organization of the Executive Branch of the
 Government (1947-1949), Task force report[s] Appendix A [-R] ... 1949
 (Volume 37), University of Michigan Library

(3) 인터넷자료

<http://blog-pfm.imf.org/pfmblog/2015/09/gender-budgeting-in-austriainterview-with-gerhard-steger.html> (2016.8.12. 검색)

http://www.un.org/en/ecosoc/newfunct/pdf/vpd_steger.pdf (2016.8.12. 검색)

2016년 통합 재정사업 평가 결과(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6.5.30.)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jsessionId=5lBwF1xkiA4BBGOVbmj2pKwE,node30?searchBbsId1=&searchNttId1=MOSF_000000000003910&menuNo=4010100 (2016. 10. 31. 검색)

(4)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369호) 제1장 제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3513호) 제2조
 고용정책기본법(법률 제13262호) 제13조의 2.

주관부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
 평가과

관계부처 :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 기획재정부 회계결산과, 여성가족부 성별영향
 평가과, 각 중앙행정기관